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9조 (전과)	<p>①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p> <p>②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입학 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⑦~ <생략></p>	<p>①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u>1학기 이상 이수자에게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u>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p> <p>②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입학 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하며, <u>반려동물보건과에 경우 입학정원의 범위 내 전과를 허용한다.</u> 다만,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⑦~ <현행과 동일></p> <p>⑧ <u>외국인유학생의 전과 희망 시 외국인 반을 운영하는 학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u></p>	<p>9월 입학자 전과 적용 및 반려동물보건과 전과 허용범위 추가, 외국인유학생 전과 가능범위 추가</p>								
제22조 (휴학)	<p>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u>보증인 연서로</u>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에 경우 보증인 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 삭제</p>								
부칙	<p>제1조 <생략> 제2조 신설</p>	<p>제1조 <현행과 같음> <u>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u>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전기공학과는 전기과로, 건축과는 건축인테리어과로, 컴퓨터게임학과는 컴퓨터정보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5학년도 말까지 미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u></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학과 명칭변경</th> </tr> <tr> <td>전기공학과</td> <td>전기과</td> </tr> <tr> <td>건축과</td> <td>건축인테리어과</td> </tr> <tr> <td>컴퓨터게임학과</td> <td>컴퓨터정보학과</td> </tr> </table>	학과 명칭변경		전기공학과	전기과	건축과	건축인테리어과	컴퓨터게임학과	컴퓨터정보학과	<p>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p>
학과 명칭변경											
전기공학과	전기과										
건축과	건축인테리어과										
컴퓨터게임학과	컴퓨터정보학과										
[별표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종별</th> <th>해당학과</th> </tr> <tr> <td>공업</td> <td>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td> </tr> </table>	종별	해당학과	공업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종별</th> <th>해당학과</th> </tr> <tr> <td>공업</td> <td>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td> </tr> </table>	종별	해당학과	공업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	<p>학과명 개편학과 학과개편 및 신설학과</p>
종별	해당학과										
공업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										
종별	해당학과										
공업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										

전문학사	통신과, 생명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바이오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과, 건축과, 기계설계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융합기계설계과, 스마트전자전기과, 스마트패키징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공학 전공, 전기공학 전공, 스마트패키징 전공, 소방안전관리 전공, 자동화시스템 전공, 전기공학과, 승강기학과	전문학사	통신과, 생명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바이오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과, 건축과, 기계설계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융합기계설계과, 스마트전자전기과, 스마트패키징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공학 전공, 전기공학 전공, 스마트패키징 전공, 소방안전관리 전공, 자동화시스템 전공, 전기공학과, 승강기학과, 산업장비 운용학과, 글로벌산업공학과, 컴퓨터정보학과, 건축 인테리어과	전문학사학위 중별 추가
관광 전문학사	국제관광경영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경영과	관광 전문학사	국제관광경영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경영과	
관광외식 전문학사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카페창업과, 카페바리스타과	관광외식 전문학사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카페창업과, 카페바리스타과	
행정 전문학사	사무비서행정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경호경찰행정과, 경호경찰행정학과	행정 전문학사	사무비서행정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경호경찰행정과, 경호경찰행정학과	
보육 전문학사	아동보육과	보육 전문학사	아동보육과	
경영 전문학사	산업경영과, 국제경영과, 마케팅비즈니스과, 세무회계과, 경영학과	경영 전문학사	산업경영과, 국제경영과, 마케팅비즈니스과, 세무회계과, 경영학과	
디자인 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웹툰출판미디어과, 시각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디자인 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웹툰출판미디어과, 시각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뷰티 전문학사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 전공, 메이크업전공, 도탈 뷰티전공	뷰티 전문학사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 전공, 메이크업전공, 도탈 뷰티전공	
예술 전문학사	생활음악과, 공연음악과, 실용댄스과, 스포츠지도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뉴케이팝학과	예술 전문학사	생활음악과, 공연음악과, 실용댄스과, 스포츠지도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뉴케이팝학과	
동물보건 전문학사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과	동물보건 전문학사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과	
웹디자인 전문학사	웹디자인과	웹디자인 전문학사	웹디자인과	
부동산 전문학사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문학사	부동산학과	
컴퓨터 게임 전문학사	컴퓨터게임학과	컴퓨터 게임 전문학사	컴퓨터게임학과	
체육 전문학사	스포츠지도과	체육 전문	스포츠지도과	

		학사		
		경 호 무 도 전문학사	경호무도학과	
[별표2]	종별	해당학과	종별	해당학과
	관광학사	호텔조리학과	관광학사	호텔조리학과, 호텔조리제 빵학과
	경영학사	산업경영학과	경영학사	산업경영학과, 경영학과
	사 회 복 지 학사	사회복지학과	사 회 복 지 학사	사회복지학과
	디 자 인 학 사	실내디자인학과	디 자 인 학 사	실내디자인학과, 뷰티디자 인과
	경 찰 행 정 학사	경호경찰행정학과	경 찰 행 정 학사	경호경찰행정학과
			공업학사	건축인테리어과
			체육학사	스포츠지도과
				학사학위종별 학과개편 및 신설학과 추가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휴학구 분)	<p>1. <생략></p> <p>2. 군입대휴학 : 군입대(지원입대 포함)로 인하여 휴학하는 자는 입대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휴학신청이 가능하며</p> <p>3.<생략></p> <p>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p> <p>5. <생략></p>	<p>1. <현행과 동일></p> <p>2. 군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자는 입대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군휴학 중 장기복무를 지원한 경우에는 장기복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현행과 동일></p> <p>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p> <p>5. <현행과 동일></p>	<p>군휴학 대상을 입대자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육아휴학 적용 나이 개정</p>
제53조 (발급사무)	<p>-----</p> <p>-----</p> <p>-----</p> <p>1.-----</p> <p>-----</p> <p>4.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 각 목을 모두 충족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p> <p>가.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p> <p>나.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p> <p>다.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p> <p>라.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p> <p>5.-----</p> <p>-----</p> <p>-----</p> <p>12. 신설</p>	<p>1.~3. <현행과 동일></p> <p>4.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 각 목을 모두 충족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p> <p>가.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p> <p>나.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p> <p>다.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p> <p>라.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 96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p> <p>5.~11. <현행과 동일></p> <p>12. 학위취득유예증명서 : 졸업요건이 충족한 재학생 중 학위취득을 유예하기를 원하는 자</p>	<p>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조건 삭제, 학위취득유예증명서 추가</p>